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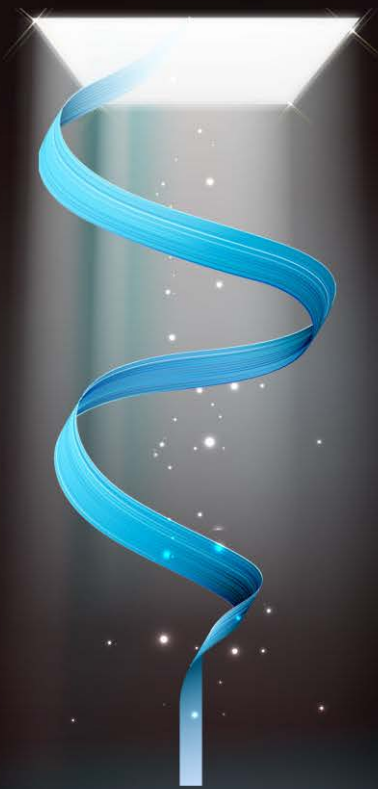
간호인력 역할 정립과 상생방안 마련



보건의료혁신포럼

신 희 복

보건의료혁신포럼 정책위원장
법무법인 공간 대표변호사



간호인력 역할 정립과 상생방안 마련

Contents

01. 의료법상 간호인력
02. 간호조무사 업무와 역할
03.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규정



간호인력 역할 정립과 상생방안 마련

1. 의료법상 간호인력

I. 의료법 상 간호인력

의료법에서 규정한 간호업무 수행 인력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구 분	간 호 사	간호조무사
법적 근거	의료법 제2조 제1항	의료법 제80조
업무 규정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의료법 제80조의2
면허·자격	보건복지부장관 면허	보건복지부장관 자격

I. 의료법 상 간호인력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면허·자격 취득자수		취업자수	
	인원	비율 (%)	인원	비율 (%)
전체 보건의료인력	1,680,204	100.0	712,699	100.0
간호사	394,662	23.5	198,313	27.8
간호조무사	729,264	43.4	189,013	26.6

-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취득자수 : 보건복지부(2018.12.31. 기준)
- 취업자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2018.12.31. 기준)

I. 의료법 상 간호인력

- **종별 간호인력 현황**

('18. 12월말 기준, 단위: 명)

구분	간호사(A)	간호조무사(B)	합계(C)	비중(B/C)
취득자 수	394,662	729,264	1,123,926	64.89%
취업자 합계	201,334	194,710	396,044	49.16%
상급종합병원	47,623	2,080	49,703	4.19%
종합병원	65,682	11,050	76,732	14.40%
병원	31,041	19,962	51,003	39.14%
요양병원	27,021	31,821	58,842	54.08%
의원	15,149	74,146	89,295	83.04%
치과병원	135	350	485	72.17%
치과의원	410	17,569	17,979	97.72%
한방병원	1,866	2,219	4,085	54.32%
한의원	967	16,147	17,114	94.35%
보건의료원	222	81	303	26.73%
보건소	2,656	1,086	3,742	29.02%
보건지소	680	1,756	2,436	72.09%
보건진료소	1,862	10	1,872	0.53%
조산원	0	10	10	100.00%
장기요양기관	2,999	10,726	13,725	77.43%
어린이집	1,091	611	1,702	35.90%
산후조리원	1,930	5,086	7,016	72.49%

I. 의료법 상 간호인력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관계 : 상생? 갈등?



의료법상 두 직종 모두 간호업무를 하는 인력

- 현장에서 함께 간호업무 수행
- 공통된 이해관계에 따른 공동의 이익추구 위한 상생 가능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역할에서 이해관계 갈등과 충돌

- 간호사 :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
- 간호조무사 :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업무 수행
- 상호 관계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 따른 갈등과 대립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관계 : 상생? 갈등?



상생 관계의 필요성

- 환자 간호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 적절한 간호인력의 활용

현재 : 상생관계 < 갈등관계

간호사 - 간호조무사 이해관계 갈등에서 주요 쟁점

『간호조무사』 직종의 지위가 쟁점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인력인가? 간호인력인가?”

간호사 - 간호조무사 이해관계 갈등에서 주요 쟁점

주요 쟁점사항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역할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간호조무사 정원규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A background image showing a nurse in profile, wearing a white face mask and a dark uniform, looking down at a patient lying in a hospital bed. The patient is partially visible, wearing a white hospital gown. The entire scene is overlaid with a semi-transparent blue filter.

간호인력 역할 정립과 상생방안 마련

2. 간호조무사 업무와 역할

Ⅱ. 간호조무사 업무와 역할

간호협회와 간무협 간 쟁점



간호협회는 '간호보조인력' ↔ 간무협은 '간호인력'



2015년 개정, 2017년 시행 의료법의 간호조무사 업무에 관한 해석

- 의료법 제80조의2 제1항에 대한 해석

Ⅱ. 간호조무사 업무와 역할

2015년 개정 의료법,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에 포함 (제4조의2 제1항)
- 시·도지사 자격 ⇒ 보건복지부장관 자격 (제80조 제1항)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제80조 제2항)
- 자격신고제 (제80조 제4항)
- 간호조무사 업무 (제80조의2)
- 의료인 준용조항 구체적 명시 (제80조의3)



Ⅱ. 간호조무사 업무와 역할

종전 의료법 간호조무사 업무 규정



법 제80조 제2항

-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 “1. 간호보조 업무”, “2. 진료보조 업무”

※ 간호협회는 규칙에 규정된 ‘진료보조 업무’에 대해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개정 의료법의 간호조무사 업무 규정

제80조의2 (간호조무사 업무)

- ①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Ⅱ. 간호조무사 업무와 역할

제8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관한 해석



간호사를 보조하여 수행하는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

제2조 (의료인)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해석 :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가 하는 업무를 수행”

Ⅱ. 간호조무사 업무와 역할

'제80조의2 제1항'의 '간호사를 보조하여'에 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으며,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간호사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역할분담을 하면 됩니다.
- 간호사가 물리적으로 바로 옆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지도가 가능한 의료기관 내에 공존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2017년 3월 10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Ⅱ. 간호조무사 업무와 역할

'보조'와 관련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의 의미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간호사를 직접 보조하는 것에 국한된 의미가 아님

간호조무사는 병원 내부의 업무규정과 병원간호부의 지시에 따른
업무분담에 의거하여 업무를 수행하면 됨

따라서 간호조무사의 '보조'는 직종간 상-하의 관계로 보아서는 안되며,
업무의 역할분담이라는 **분업의 관계**로 이해하여야 함

Ⅱ. 간호조무사 업무와 역할

간호인력간 업무와 관련한 '분업'의 관계에 대한 해석



상하관계의 수직? 동등관계의 수평?

간호부 팀장 또는 수간호사와 해당부서의 간호조무사 사이에는
수직적 분업관계가 성립하지만

동일 외래진료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개인 사이에는
업무의 역할분담이라는 수평적 분업 관계만 성립함

Ⅱ. 간호조무사 업무와 역할

의료법 상 간호조무사의 역할의 변화

종전 의료법 : 간호보조업무를 하는 '간호(보조)인력'



개정 의료법 :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가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Ⅱ. 간호조무사 업무와 역할

의원급 간호조무사 업무 규정의 변화



종전 의료법 :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

- 간호사가 없이 간호(보조)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이에 따라 간호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도 진료보조 차원에서 업무 수행



개정 의료법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

- 간호사 없어도 '간호' 업무 가능
- '간호인력'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하에 '간호업무' 수행

Ⅱ. 간호조무사 업무와 역할

간호조무사 구체적 업무범위를 정하는 것과 관련한 고려사항



제80조의2(간호조무사의 업무)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양한 변수에 따라 간호조무사 업무범위가 다를 수밖에 없는 점

- 간호사수의 많고 적음에 따른 차이 : **간호사가 적을 수록 간호조무사의 수행업무 많음**
- 환자중증도 및 간호필요도에 따른 차이 : **환자중증도가 낮을수록 간호조무사 수행업무 많음**
-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차이 : **요양병원, 의원 간호조무사 수행업무 많음**
- 기관별 간호인력 운용방식에 따른 차이

Ⅱ. 간호조무사 업무와 역할

의료기관 종별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현황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간호간병통합병동 :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업무 수행 / 위생간호 등 기본간호가 주요업무
- 외래 : 같은 진료과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업무를 수행 / 수평적 역할 분담 / 외래총괄은 간호사가 부서장



요양병원, 의원

- 요양병원 : 간호관리자는 간호사 / 간호조무사의 수행 간호업무는 간호사의 수행 간호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음
- 입원병상이 있는 의원 : 간호관리자는 간호사 /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수행 간호업무는 크게 다르지 않음
- 외래만 진료하는 의원 :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의원 다수

Ⅱ. 간호조무사 업무와 역할

간호조무사 구체적 업무범위를 정하는 것과 관련한 고려사항

어떤 경우에서건 반드시 간호사가 해야만 하는 **최소 범위의 위임불가 업무만 규정**

그 외의 업무는 간호조무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로 허용하되

구체적 업무범위의 결정과 운영은 **각 의료기관의 자율로 위임**

※ 의료기관 종별, 근무부서별 업무범위를 정하는 문제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비효율적이며, 중장기 과제로 보는 것이 타당



간호인력 역할 정립과 상생방안 마련

3.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규정

Ⅲ.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규정

간호협회와 간무협 간 쟁점



대한간호협회
Korean Nurses Association

'보조인력'인데 정원 대체는 잘못



대한간호조무사협회
Korean Licensed Practical Nurses Association

일부 대체는 별도정원 필요,
의료기관 아닌 기관은 '대체' 해당 아님



보건의료관련 법령의 간호인력, 특히 간호조무사 정원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

- 입법정책의 문제
- 간호사 정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토록 하거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라고 정한 정원규정에 대한 해석

Ⅲ.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규정

정원규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간호의 질'?

- 간호필요도와 비용효과를 고려한 '**적정!**'한 간호의 질



간호필요도

- 치료적 목적의 처치 간호
- 위생간호, 활동돕기 등 기본간호

Ⅲ.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규정

정원규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비용효과

- 환자의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재정



간호인력 수급

- 필요로 하는 간호인력의 수
- 간호사 수급의 적정성

Ⅲ.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규정

보건의료관련 법령의 간호조무사 정원규정의 유형

- 간호조무사 정원규정이 부재한 경우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별도 정원으로 규정한 경우
-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한 경우
- 간호사 = 간호조무사인 경우



Ⅲ.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규정

간호조무사 정원규정 부재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은 간호조무사 인력기준 부재

- 의료법 시행규칙에 간호사 인력기준만 존재



법정 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보상도 부재

- 간호사는 병동근무자에 대한 간호등급제 시행으로 수가보상제도 시행



일부 상급종합병원 등에서는 간호조무사 자격 불인정, 무자격자와 동일하게 취급

- 무자격자와 구분없이 '사원', '보조원'으로 불리고 있으며, 업무도 무자격자와 구분 없이 '간호보조 업무' 수행

Ⅲ.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규정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정원 규정 필요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법정 간호인력**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역할을 고려한 **적정 인력기준** 필요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가보상체계 마련**과, 이에 근거한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Ⅲ.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규정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별도 정원으로 규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인력 정원규정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병동지원인력
- 재활병동은 '재활지원인력' 추가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 병동 간호인력 구성의 바람직한 모형

- 간호인력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지원인력간 업무 분담과 역할 정립을 기반으로 한 '팀'간호시스템 구축
- 각 직역별 수가보상과 그에 따른 처우개선이 가능한 수가보상체계

Ⅲ.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규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구성 적정성 여부는 별도 논의 필요



간호인력 수급과 간호필요도에 근거한 적정 인력구성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간호조무사 인력 부족에 대한 지적

- 중소병원뿐 아니라 간호사가 많이 배치된 상급종합병원 현장 간호사들도 간호조무사 추가배치 요청
- 2018년 일자리위원회 연구용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1:20 및 1:25가 적정하다고 제시



지방중소병원, 간호사 구인난에 대한 지적

- 간호사를 구할 수 없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중소병원에 한하여 간호사-간호조무사 인력구성 조정 필요성 제기
- 만성기, 회복기 환자 중심의 의료기관에 대한 간호인력 기준 마련하는 것도 대안

Ⅲ.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규정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대체



의료기관 : 요양병원, 정신병원, 입원환자 5인이상인 1차의료기관

- 요양병원 : 간호사 정원의 2/3 이내
- 정신병원 : 간호사 정원의 1/2 이내
- 입원환자 5인이상인 1차의료기관 : 간호사 정원의 1/2 이내



그밖의 기관 : 산후조리원, 보건소

- 산후조리원 :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수를 2.5로 나눈 수의 간호조무사 + 간호사 정원의 30% 이내
- 보건소 : 2명(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은 6명)을 간호사 정원 내에서 또는 별도정원으로 추가 배치

Ⅲ.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규정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 대체한 경우에 대한 해석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한 경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근무하며, 간호관리자는 간호사

이들 기관의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라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대체한다고 하여 간호사를 대체한다고 볼 수 없음

Ⅲ.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규정

정원 일부 대체를 대신하는 대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각각 별도정원으로 규정하는 것도 대안

※ 정신병원

현재

입원환자 13명당 간호사 1명을 두되, 간호사 정원의 1/2 범위 안에서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

대안

입원환자 26명당 간호사 1명과 간호조무사 1명을 각각 두되,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로 대체 가능

Ⅲ.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규정

정원 일부 대체를 대신하는 대안



기대효과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분담과 역할 정립, **수가보상 및 처우개선에 더 합리적**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직종 갈등을 완화**하고, **상생관계 조성**에도 더 바람직
- 간호사의 입장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하는 문제 해결**
- 간호조무사의 입장에서는 **독자적인 정원 확보 및 역할 인정**받게 됨

Ⅲ.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규정

정원 대체 인원(비율)의 적정성 여부는 별개의 논의사항



대체인원 수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 '간호필요도 + 환자 의료비부담 및 건강보험재정 + 간호인력 수급'까지 종합적으로 고려

Ⅲ.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규정

간호사 = 간호조무사

입원환자 5인 미만 또는 외래만 진료하는 1차의료기관

간호사 정원의 100% 이내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노인복지시설 중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의료기관이 아닌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보건진료소의 방문간호는 시설장이 간호사일 것
-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중 1명

Ⅲ.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규정

간호사 = 간호조무사

장애인복지시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중증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은 2명 이상일 땐 1명은 간호사일 것

영유아 100명 이상 보육시설(어린이집)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유치원 :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으며,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함

Ⅲ.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규정

1차의료기관

- 외래만 진료하는 의원의 주된 업무 : 의사의 진료업무
 - 간호 인력의 주된 업무 :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진료보조업무'
- ※ 입원환자 5인 미만인 의원의 경우에도 외래진료 업무가 주된 업무



개정 의료법에서 1차의료기관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간호사가 없어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따라서 외래만 진료하거나 입원환자 5인 미만의 1차의료기관은 **간호사 정원의 100%까지 간호조무사로 대체**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Ⅲ.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규정

1차의료기관

또한 간호필요도와 의료비 부담, 간호인력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래진료가 주된 업무인 1차의료기관까지 '반드시' 간호사를 배치하여야 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참고로, 1차의료기관 중에서도 간호필요도가 더 높은 입원환자 5인이상인 의료기관은 50%이상을 간호사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Ⅲ.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규정

그 밖의 기관

- 의료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도록 한 기관은 환자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점 고려

※ 요양(돌봄) 시설,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보육시설



Ⅲ.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규정

그 밖의 기관



촉탁의를 두도록 한 시설

- 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시설
- 지속적인 치료 및 기본적인 간호는 필요로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환자가 아닌 노인 및 장애인 거주시설
-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모두 촉탁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환자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간호업무를 수행
-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해 치료를 받게 함

Ⅲ.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규정

그 밖의 기관



촉탁의가 없는 시설

- 경로당, 노인공동생활가정, 어린이집
- 의료기관이나 촉탁의가 있어야 하는 기관과 같이 치료 및 간호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있는 것이 아님
- 어린이,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이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와 응급대비 및 예방 차원에서 간호인력 배치
- 일상적인 건강관리, 비상 시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등 의사의 지도 없이 수행 가능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

Ⅲ.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규정

그 밖의 기관

간호필요도와 의료비 부담, 간호인력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료기관이 아닌 시설까지 '반드시' 간호사를 배치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최소한의 치료 및 간호업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은 촉탁의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촉탁의 지시 하에 업무 수행
- 환자가 발생하여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의뢰 및 이송체계 구축되어 있음

Ⅲ.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규정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정원규정과 관련한 종합 의견

간호필요도와 의료비 부담, 간호인력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간호 및 의료필요도를 우선하여 간호 및 의료필요도가 높은 기관의 순으로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음

간호인력 중 '간호사 우선 배치'의 순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정신병원, 요양병원, 입원환자 5인이상 1차의료기관 ➔ 입원환자 5인미만
및 외래만 진료하는 1차의료기관 ➔ 촉탁의를 배치한 노인·장애인 요양 및 복지시설 ➔ 촉탁의를 두지 않은 복지
및 보육시설

Ⅲ.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규정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정원규정과 관련한 종합 의견

**간호조무사에 의한 간호사 정원 대체가 문제라는 주장은 오류이며,
법적 업무에 대한 법리적 해석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없음**

-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업무를 하지만, 반드시 간호사와 1:1의 관계에서 보조하는 것이 아니며, 1차의료기관은 간호사 없이도 의사의 지도 하에 독립적으로 간호업무 가능
- 의료법 외의 법률에 근거한 요양(돌봄)시설, 복지시설, 보육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닌 바, 반드시 의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님

Ⅲ.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규정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정원규정과 관련한 종합 의견

각종 기관에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정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토록 한 것은 **간호필요도에 근거한 적절한 간호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정책 결정**으로 볼 수 있음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대체하는 경우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각각 별도정원으로 개선하는 방안 검토 필요**

Ⅲ.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규정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정원규정과 관련한 종합 의견

간호필요도와 간호인력 수급 등을 고려해 간호인력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며, 정부는 필요에 따라 이를 개선해 나가고 있음

- 치매환자 간호의 중요성에 따른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기관 치매전담실 간호인력 배치기준
- 장기요양기관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간호인력 배치기준
- 1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케어코디네이터



감사합니다